

의안번호	제818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8년 6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8
----------	-----

제출연월일 : 2018년 6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16.9.22.)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 2.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안 별표)
  - [현행] 제1호 46천원(도지사는 실비), 제2호 40천원
  -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제2호 상한액 : 서울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 외 50천원)
-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5조제4의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안 제2조 등)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상시출장공무원”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한다)에 대하여는”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구역외”를 “구역 외”로, “업무외”를 “업무 외”로, “통산”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이외의”를 “제1항 이외의”로, “계급별료”를 “직급에 따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은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을 “영 제8조의2제5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로,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행전안전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5조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의 규정은”을 “영 제27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

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표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숙박비 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식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u></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출장을 요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u>구역외에</u> 출장한 일수와 본 <u>업무외의</u>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u>통산</u>하지 아니한다.</p> <p>③ <u>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p>	<p><u>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 범위에</u> <u>서 -----</u> <u>-----한꺼번에 -----</u> <u>---</u></p> <p>② ----- ----- ----- ----- ----- ----- ----- <u>-----구역 외에</u> <u>-----업무 외의-----</u> <u>-----합산-----</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여비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p>
<p>② 제1항이외의 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p>	<p>② 제1항 이외의 도 공무원에게는 ----- “영” --- 별표 1의 각 호를 -----.</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8조의2제5항은 -----.</p>
<p>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p>	<p>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중 “소속 장관” -----</p>



현행	개정안
<p>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p>	<p>-----.</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u>행정안전부장관</u>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3. 영 제17조제1항 ----- "<u>인사혁신처장</u>과----- -----.</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관리규정」</u>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를 "<u>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u>」 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p>	<p>4. 영 제18조제1항 ----- "<u>「공용차량 관리 규정」</u> ----- ----- -----.</p>
<p><u>&lt;신설&gt;</u></p>	<p>4의2. <u>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u></p>
<p>5. 제24조제5항 중 "<u>「국가공무원법」</u> 제71조제2항"은 "<u>「지방공무원법」</u> 제63조제2항"으로 본다.</p>	<p>5. 영 제24조제5항 ----- ----- -----.</p>
<p>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6. 영 제27조는 ----- -----.</p>
<p>7. 제29조제1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p>	<p>7. 영 제29조제1항 -- "<u>인사혁신처장</u>-----</p>

현행	개정안												
<p>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u>” 및 같은 조 제4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u>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 “<u>인사혁신처장</u>----- ----- ----- “<u>인사혁신처장</u>----- ----- ----- -----.</p>												
<p>8. <u>별표 1</u>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 규정</u>」”으로, “「<u>계약직공무원규정</u>」”은 “「<u>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u>」”으로, “<u>일반계약직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u>”으로, “<u>전문계약직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u>”으로 한다.</p>	<p>8. <u>영 별표 1</u>----- ----- ----- ----- ----- -----,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u>전문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한다.</p>												
<p>【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p> <table border="1" data-bbox="228 1982 761 2029"> <tr> <td>구분</td> <td>철도</td> <td>선박</td> <td>항공</td> <td>자동차</td> <td>숙박비</td> </tr> </table>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숙박비	<p>【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p> <table border="1" data-bbox="815 1957 1369 2029"> <tr> <td>구분</td> <td>철도 운임</td> <td>선박 운임</td> <td>항공 운임</td> <td>자동차 (버스운임)</td> <td>숙박비 (1박당)</td> </tr>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숙박비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현 행

	운임	운임	운임	(버스)운임	(10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 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개 정 안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

현행	개정안
기준으로 한다.	금을 기준으로 한다.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발 취

## □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 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 인사혁신처 예규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15.1.6.)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 16.9.22.)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안 별표)
- [현행] 제1호 46천원(도지사는 실비), 제2호 40천원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제2호 상한액 : 서울 70천원/광역시 60천원/그 외 50천원)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5조제4의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2조 등)

## 2. 비용 발생 요인

### ○ 숙박비 지급 금액 현실화에 따라 여비 지급 비용 증가

※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예산수반 사항 없음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별표]

### 운임·숙박비 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숙박비 지급일 2,400박 / 지역구분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129,200천원 세출 추계

- 서 울 : 130박 × 30천원 = 3,900천원

- 광 역 시 : 380박 × 20천원 = 7,600천원

- 기 타 : 1,890박 × 10천원 = 18,900천원

※ 2호 기준으로 숙박수 × [변경된 숙박비 - 4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숙박비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로 충당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이상은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세 입						
국 비 도 비 기타 (사업수입)						
세 출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국내여비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재원 조달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도 비					
자체 수입	소 계	7,600	30,400	30,400	30,400	129,200
	지방세	7,600	30,400	30,400	30,400	129,200
	세외수입					